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의 대응방안: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

윤 가 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요약) 고령화 사회에서 부각되는 문제들은 매우 다양하며, 고령자의 인구가 늘어나는 대다수 문화권에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자들의 사회참여 등의 활동이나 고용, 평생교육 등의 사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고령 사회 및 초고령 사회로 변모할 경우 그 문제들이 현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부각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령 사회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려는 방안으로 고령자들을 위한 의무교육제도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는 고령자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관리, 사회참여, 세대 간 교류의 활성화, 자아실현 등의 기능을 지니면서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자 성공적인 노화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운영에서 포함시켜야 할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하여 참여자의 역할 등의 운영계획이 명시되었고, 그리고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논의하였다.

[Key words: 고령 사회, 사회 참여, 성공적 노화, 의무교육제도, 자원봉사활동, 활기찬 노후]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윤가현 교수 앞으로 하시길 바라며, 저자의 e-mail 주소는 ghyoun@chonnam.ac.kr이다.

서론

행복의 개념이나 정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행복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happiness index)도 무엇을 지표로 삼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을 토대로 해서 행복 여부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가능하다(Gamble & Garling, 2012). 고령자들의 생활만족을 측정하는 연구는 수없이 많지만, 그들의 생활만족을 결정해주는 요소들은 크게 몇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해야 하고, 사회 참여 등의 활동을 유지해야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인간관계도 대체로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 것 등이다(Borg, Hallberg, & Blomqvist, 2006; Gabriel & Bowling, 2004; Youn & Song, 1992).

우리나라 정부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령자들의 사회 참여 활동이나 고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는데(고용노동부, 2011; 교육부, 2013; 대한민국 정부, 2011; 보건복지부, 2013b), 본고에서는 그 증진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또는 전략의 하나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근거하여 1940년대 말 교육법을 제정하여 의무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했다.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 등의 차별을 받지 않고 그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법에 의하여 1950년도부터 6년의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의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시키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현재 의무교육의 범위는 1998년의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3년의 중등교육까지 확장되었다(손희권, 2001).

그렇다면 현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 범위를 제1차 의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

무교육이라고 할 때, 본고에서 제안하는 고령자를 상대로 실시하자는 의무교육제도는 제2차 의무교육(secondary compulsory educa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는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 제도를 고령자의 상황, 조건 등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적용시킨다면, 의무교육에 준하는 교육, 즉 준(準)의무교육(semi-compulsory educa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단계별로 구분할 때, ① 초등학교를 제1차 또는 기초교육(primary education), ②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직업학교 등을 제2차 교육(secondary education), 그리고 ③ 학위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대학이나 그 이후의 교육과정을 제3차 교육(tertiary education)이라고 한다면, ④ 평생교육이나 본고에서 제안하는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과정(또는 준의무교육과정)은 제3차 이후의 교육(post-tertiary compulsory or semi-compulsory 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①과 ②, 또는 ①부터 ③까지의 과정은 근로 및 납세의무를 완수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시기에 잘 적응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면, ④의 교육과정은 생의 후반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역량을 갖추기 위한 준비과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의 배경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20세기 후반 이래 우리나라의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10년 이미 80세를 넘었고, 장기적으로는 90세를 넘어 100세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1년을 기준으로 65세가 되었을 때 기대여명은 남성이 17.4년 그리고 여성이 21.9년에 해당된다(통계청, 2013). 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2000년 7%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으며, 2013년도 9월 말에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그 비율이 12.2%를 차지하고 있다. 또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진행되면서 고령자 인구는 더욱 늘어나 2018년경에는 그 비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그리고 2026에는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에 의한 가족의 해체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이 약화된 가정, 심지어는 역기능 상태의 가정(dysfunctional family) 또는 해체된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면서 학대나 방임 상태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건복지부, 2013c). 그들의 상당수는 소외계층으로 전락한 후 성장해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범죄 등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Engbersen, van der Leun, & de Boom, 2007).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파생되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을 경감시킬 대책으로서 고령자들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줌과 동시에 그들의 건강관리 욕구, 여가문화 욕구,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사회참여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 및 정책적 차원의 국가 주도의 교육체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와 같은 교육체제는 각국의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고령자 문제를 위해 이미 1991년 12월 16일 UN총회에서 채택한 고령자를 위한 원칙들[UN principles for older people: 독립성(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및 존엄성(dignity)], WHO(2002)에서 채택한 활기찬 노후(active aging)의 개념, 또는 2002년 4월 스페인에서 제안된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등에 부합된 것이며(선우덕 · 김세진 · 모선희, 2012; 정경희 · 정은지 · 남현주 · 최혜지, 2012; Formosa, 2012),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계획(예: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부합된 것이다(대한민국 정부, 2011).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의 필요성

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체제가 다시 도입되어야 하는가? 최근 고령자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저소득층 노인이나 건강하지 않은 노인 중심의 선별적인 사회복지체제로는 노인이 지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

니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보건복지부, 2013d), 이제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정책 차원에서 고령자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자들의 상당수가 기술 발달로 인한 편리함을 실감하면서도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에 대하여 소외감, 거부감, 저항감을 경험하고 있다(Charness, Kelley, Bosman, & Mottram, 2001). 그들은, 특히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 속도에 따른 적응에 대한 불편하고 두려운 느낌(technophobia)이 적지 않으므로(Dickenson & Gregor, 2006; Gilbert, Lee-Kelley, & Barton, 2003), 그들을 대상으로 초고속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켜줄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자들이 연령 증가와 함께 심신 기능의 약화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30.8%에서 2012년 34.4%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도 상반기에는 그 비율이 36.0%를 차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특히 생의 후반기의 상당 기간을 투병생활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에 고령자들이 장기요양보험급여의 혜택을 받는 기간이 줄어들고, 노인요양시설에 의존하는 기간이 짧아진 상태에서, 즉 가능하면 오랜 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또한 각종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을 낮추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과다한 비용 지출을 절감시킬 필요가 있다.¹⁾

셋째, 통계청(2013)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8.9%이며, 또 55세에서 79세 사이의 연령층의 거의 60% 정도가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

1) 박상철(2010, p. 179)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수하고, 질병에 기인하지 않고 자 연사를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령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체계수립을 주장 하였다.

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싶어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거나 또는 비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싶어도 마땅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가 없다고 느끼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들이 경제적으로든지 비경제적으로든지 사회적 활동을 활성화해 하면서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되는 고령자들이 감소될 필요가 있다.

넷째, 물질문명 발달에 의한 역기능 중의 하나로 세대 간의 단절이 심해지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력이나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력까지도 약해지고 있다. 고령자 부부로만 구성되는 가구 수 및 홀로 사는 고령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비율은 전체 노인들의 20%를 초과한 상태인데(통계청, 2013), 그 경우 교류의 단절이 심해져서 정서적 지원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세대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고령자의 존재가치를 폄하하는 등의 차별이나 편견들이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또래 간이나 세대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젊은 세대나 고령자들이 모두 서로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부각시키면서 차별이나 편견 의식을 타파시킬 필요가 있다(Hummert, Garstka, Ryan, & Bonnesen, 2004).

다섯째, 우리나라는 왕성한 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령 제도 때문에 젊은 나이에 무능력하거나 불필요한 인간처럼 취급을 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그들을 비롯하여 고령자들의 경력과 지혜 등의 소중한 자원(resources)을 사장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을 젊은 세대들에게 교류를 통해서 전수시킬 수 있는 기회가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이라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하는데, 유럽에서는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토대로 사회적 참여와 함께 자원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선우덕 등, 2012).

고령자 고용 면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나라 정부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및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06년 9월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7-2011) 그리고 2011년 12월에는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했는데, 여기에는 정년 연장을 유도하고 또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고용율도 높이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곧 55-64세의 고용율이 2006년 59.3%에서 2011년 11월 63.8%로 증가했다(고용노동부, 2011). 그렇지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은 그 연령대를 지난 고령자들이 보다 더 성공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며, 본고에서 제안하는 의무교육제도의 운영은 그러한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950년대 이래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근자에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민주시민의 양성에 맞추고 있다(김명정,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에 치중하는 학교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과 거리가 멀다. 즉 한국의 21세기를 이끌어갈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재가치를 토대로 미래사회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항상 관계 속에서 소외당하기 일쑤이어서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이나 유지 능력을 신장시켜주지 못했다. 이에 고령자들은 보다 더 밝은 미래사회의 구현을 위해 모든 계층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따뜻하고 안정된 사회 환경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고령자들에게 미래사회에 대한 지도나 안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간을 연장시켜줄 필요가 있다.

일곱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망자 수는 무려 1만 6천 명에 이르며, 자살은 전체 사망원인 중에서 4위에 해당될 정도이다(보건복지부, 2013d).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한 자살률도 높지만, 특히 질병이나 외로움, 가난,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고령자들의 자살률은 다른 문화권에 비하여 훨씬 더 심하게 높은 편이다(OECD, 2013). 우리나라는 자살 사망률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을 정도의 실정인데(보건복지부,

2013d), 20세기 중반 이후 우리나라를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시켰던 주역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로 고령자들에게 존엄성(dignity)을 인정받을 자격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평생교육의 참여가 확대될수록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부각되는 여러 가지 위기나 문제들을 스스로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보면서 평생교육 참여 비율 확대에 대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Broek & Hake, 2012). OECD(2012)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평균은 40.4%이었다. 스웨덴은 73.4%, 핀란드 55.0%, 영국 49.3%, 미국 49.0%인 반면, 한국은 35.6%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5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생교육 참여율은 2008년 26.4%에서 2009년 28.0%, 2010년 30.5%, 2011년 32.4%, 그리고 2012년 35.6%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구분할 때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은 훨씬 더 낮아졌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의하면, 제3차 기본계획(2013-2017)이 종료되는 2017년도에는 OECD의 평균인 40.4%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교육부, 2013). 그러나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표방하지만, 평생학습의 기본계획은 아직도 64세 이전의 성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의 대상

본고에서 제안하는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수혜의 대상을 넓혀가면서 교육제도를 정착시킨다. 아울러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교육대상자의 연령범위는 최소 60세 이상이면서 75세 미만인 자로 국한시킨다. 장차 퇴직연령이 높아지거나,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높아지거나, 65세라는 고령자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시기가 도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

래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연령범위도 역시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 연령이 교육대상자에 해당될지라도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질환으로 입원해 있거나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일 경우는 본 교육과정의 적용에서 제외시킨다. 본 교육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대상자 비율이 감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본 교육과정의 목표 중의 하나는 고령자의 사회 참여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장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자들의 교육 수혜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시킨다. 기본적으로 전일제 직장생활(full-time employment)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교육대상자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자는 본 교육과정의 적용에서 제외시킨다. 단, 그들 중에서 봉사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경우 교육대상자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60세 이상이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사람의 경우 주기적으로 건강 관련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제 직장생활(part-time employment)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육 수혜자나 봉사자의 역할을 원하는 자는 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60세 미만의 개인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 교육대상자가 아니라 모두 자원봉사자로서의 활동(volunteer employment)을 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50대에 퇴직했다면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교육과정운영에 관련된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도록 하며, 대학생들이 관여할 경우 모두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보조자로서의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의무교육과정의 기간 및 대상자의 역할

의무교육제도(준의무교육제도)의 교육연한은 최단 3년에서 최장 6년 미만으로 국한한다. 단 연령이 75세를 초과했거나 교육연한이 6년이 되었더라도 개인의 역량이나 조건에 따라서 80세 이전까지는 상기에 언급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교육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첫째는 지역사회 및 후세대를 위한 봉사자의 역할이며, 둘째는 본 교육과정의 대상자인 동료 참가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지도자 또는 봉사자의 역할이며(이 부분은 뒤편에서 상술함), 그리고 셋째는 평생 배움의 자세를 갖추는 지혜 차원에서 수혜를 받는 학생의 역할이다.

교육 대상자들은 각각 상기의 세 가지 역할에 따른 비중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역할이라도 그 비중이 최소 10%를 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교육대상자 A는 봉사자 역할 20%, 지도자 역할 10%, 그리고 학생 역할 70%이라면, 교육대상자 B는 봉사자 역할 10%, 지도자 역할 50%, 그리고 학생 역할 40%, 교육대상자 C는 봉사자 역할 10%, 지도자 역할 70%, 그리고 학생 역할 20%일 수 있다.

의무교육제도의 기능

본고에서 제안하는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는 다양한 기능을 지니는데, 그 기능은 의무교육과제도의 목적에 해당되기도 한다. 이들을 하나씩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education)의 기능이다.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제공되는 평생 교육(lifelong education or continuing education), 또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career를 원하거나 경제 활동을 희망하는 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이나 훈련(vocational education or training)의 기능을 지닌다. 지중해 근처의 몰타(Malta)공화국은 1993년 60세 이상이 다닐 수 있는 학교(UTA, University of the Third Age) 설립했는데, 이 역시 평생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식 학교로서 일정한 등록비를 받고 있어서 도시 거주자, 그중에서도 여성이나 중산층에게 혜택이 쏠리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Formosa, 2012a, 2012b).

둘째, 건강관리(health care or management)의 기능이다. 교육과 건강의 관계를 밝힌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건강관리행동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삶의 질도 더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일수록 훨씬 더 두드러진다(Anzai 등, 2000; Cowell, 2006; Regidor 등, 1999).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고령자들의 인지적 활동을 자극하면서 인지적 기능의 결핍(impairments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

in cognitive function)을 예방해줌과 동시에 체력 단련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시켜줄 수 있는데 (maintaining their independence), 결국 80대 이후에까지도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즉 정신 및 신체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셋째, 사회 참여(social participation)의 기능을 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령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기 쉽지만, 본 교육제도의 실시에 의해서 60세 이후에도 다양한 계층의 또래들과의 사회적인 교류를 왕성하게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을 찾고 구성원들 사이의 응집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고령자 비율이 우리나라처럼 늘어나자 홍콩에서도 고령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근래 평생교육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Tam, 2012),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관적인 안녕감이 높아지는 효과 이외에도 사회 참여를 더 능동적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Zepke, 2013). 아울러 평생교육은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 기회도 제공해주는 것 이외에도 양성평등과 같은 민주주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나 이를 실천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스스로 차별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도록 해준다(Brännlund, Nordlander, & Strandh, 2012).

참고로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부터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교실(‘노인대학’이나 ‘노인학교’의 명칭으로도 통용되고 있음)이 운영되고 있는데, 고령자들의 여가활동이나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1,335개소의 노인교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실제로는 교육적인 기능보다도 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태이다(김수영·모선희·원영희·최희경, 2009; 보건복지부, 2013d).

넷째, 세대 간 교류(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이다. 고령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목적이 단순히 자신들이 지니는 가시적인 문제들의 해결책 모색의 차원을 떠나서 보다 더 나은 미래사회를 위해서 미래의 주역들이 세상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대 간 교류를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events and activities)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세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모든 연령층이 서로 자신들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기능이 나타나도록 한다(Williams & Nussbaum, 2001).

다섯째, 박애주의(philanthropic goals) 또는 생성감(generativity)을 실현해주는 기능을 지닌다. 즉,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는 고령자들이 현재까지 축적한 지식이나 기술, 재능, 지혜로운 삶에 대한 가치관 등을 자원봉사활동을 토대로 지역공동체나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전달하면서 고령자세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현하는 기능을 지닌다(김수영 등, 2009; 보건복지부, 2013d; Schoklitsch & Baumann, 2011).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 프로그램(예, Donate your talent!)을 통해서 예비노인(퇴직 이전의 장년 세대)들에게는 퇴직 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모든 인간을 동등한 인격체로 배려하는 성품과 책임의식을 키워줄 수 있으며, 역시 소외계층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더 이상 소외받는 대상이 아닌 소중한 사람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는 역시 고령자들에게 학교생활을 통하여 사회나 후세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젊은 시절부터 부여되었던 다양한 역할과 책임(roles & responsibilities)을 다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기능에 해당된다.

여섯째, 삶을 즐기면서 활력을 찾음과 동시에 적응력을 키워주는(enjoyment, rejuvenation, & adaptability) 기능을 한다. 생의 후반기에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 과거의 추억이 되살아나 몸과 마음이 현재보다 더 젊게 느껴질 수 있다. 아울러 고령자들에게 학교생활은 빠르게 변모하는 현재 및 미래사회에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준다.

마지막으로 연령 친화 지역사회(age-friendly community) 환경을 조성해주는 기능을 지닌다. 앞에서 설명했던 다른 기능들은 대부분 이 기능에 포함된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략으로 2007년부터 WHO에서는 모든 연령층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물리적, 사회적 환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

경의 조성을 위한 “age-friendly community or city”를 추진하고 있다. WHO에서는 특히 고령자들의 입장에서 젊은 시절과 비교하여 차별이나 불편함이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8대 분야[지역사회 환경(outdoor space & buildings), 교통(transportation), 주택(housing),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사회통합(respect & social inclusion), 고용과 소득(civic participation & employment), 의사소통과 정보(communication & information), 보건 및 환경(community support & health services)]를 강조하고 있다(정순돌·어윤경, 2012). 즉 본고에서 언급하는 의무교육제도의 과정은 고령자들이 다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등 모든 연령층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연령 친화 지역사회의 창건에 직결되는 기능을 지닌다.

의무교육제도의 운영

교육과정 운영 장소

우리나라는 현재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을 강화하려고 한다(교육부, 2013). 이에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과정에서 제공하려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실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국공립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설을 이용하지만, 지역사회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사립 대학교의 평생교육원도 이용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은 폐교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현재 초중고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시설을 이용한다.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대상자의 수가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통학거리 등에 따라서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컴퓨터를 단체로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연간 운영계획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학년도(academic year)는 매년 3월

윤가현

초순 시작하여 익년 2월에 종료하며, 해당 학년도의 1학기는 매월 3월 초순부터 8월 하순까지 그리고 2학기는 동년 9월 초순부터 익년 2월 하순까지이다. 매학기 교과과정은 15주일로 한정하며, 나머지 기간은 봉사활동이나 학예발표회, 수학여행, 건강검진 및 체력검정, 그리고 방학으로 구성한다. 한 학기의 구성은 다음의 내용과 같다.

- 제1학기 (3월 초순 - 8월 하순)
 - 정규 교과목 수업: 3월 초순부터 6월 초순까지 15주간
 - 학예발표회 및 수학여행: 6월 중순부터 6월 하순
 - 건강검진 및 체력검정: 7월 초순
 - 방학: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
- 제2학기 (9월 초순 - 익년 2월 하순)
 - 정규 교과목 수업: 9월 초순부터 12월 초순까지 15주간
 - 학예발표회 및 수학여행: 12월 중순부터 12월 하순
 - 건강검진 및 체력검정: 익년 1월 초순
 - 방학: 익년 1월 중순부터 2월 하순

교육과정의 주간 운영계획

교육과정의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정규 학교 생활은 매일(월-금) 오전 9시 40분부터 시작되며, 최소 1주일에 1회 이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도우미(교통, 안전 등) 역할을 한다. 등교 도우미 역할은 정규 학교생활이 끝난 방학 중이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일정에 맞추어 연장한다. 단, 농어촌 지역에서 일손이 바쁜 기간 동안은 학교생활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정규 교과목 수업에서의 1주일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매일 오전 10:00부터 교과목 수업이 시작되지만, 오전 9:40부터 10:00까지 교과목 수업 등이 진행되기 이전에 10-15분 정도 국민보건 체조를 실시한다.
- 교과목 수업은 45-50분을 1시간 단위로 하며, 다음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10-15분을 휴식시간으로 정한다.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

- 교과목 수업은 1주일에 4일(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만 실시하고, 1일 수업은 4시간(즉 1주일 16시간) 정도로 편성한다.
- 교과목 수업(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의 시간은 오전 2시간(10:00-12:00) 및 오후 2시간(1:00-3:00)로 하며, 정오부터 오후 1:00까지는 점심 휴식으로 한다.
- 수요일의 일정은 교과목 수업이 아닌 다른 활동으로 편성한다. 즉 9:40-10:00까지 국민보건체조 실시는 동일하지만, 10:00에 시작되는 첫 시간은 1주일 활동 보고 및 활동계획에 관한 회의를 한다. 그 이후의 시간은 학예발표회 준비,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및 문화 관련 교양을 쌓는 시간을 갖는다.
- 수요일 2교시부터의 시간 활용으로 매월 1회 2시간 정도는 EBS와 연계하여 1980년대 이전에 제작된 한국영화를 관람한다. 아울러 매월 1회 정도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입소시설을 방문하여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다. 기타 시간은 학예발표회 준비 및 동아리 활동을 한다.
- 매일 3시 이후에는 봉사활동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하교 도우미 역할을 1주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봉사활동 시간은 형편에 따라서 조절한다.

교육과정에서의 프로그램 영역 및 이수시간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체력 단련 등의 건강관리, 두뇌기능을 자극하는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가나 오락(entertainment) 등 노화방지에 관련된 이점(anti-aging benefits)을 지니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교육프로그램은 학교마다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시군이나 시도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한 학기 동안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및 금요일에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주당 16시간, 15주이므로 모두 240시간이다. 그 240시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봉사활동 이론 (총 2시간): 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봉사의 기능

윤가현

등의 봉사활동 이론을 매 학기 1회 2시간 정도 실시한다.

- 체력단련 (총 30시간): 걷기, 자전거 타기, 요가, body stretching, gate ball 등 여가 활동 위주의 체육 시간을 매주 2회, 1회 1시간씩 실시한다.

- 정보기술 교육 (총 16시간): e-mail 이용이나 internet에서의 정보 검색,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료 정리 및 보관법, 및 휴대폰 사용법 등을 매월 2회, 1회 2시간 정도 실시한다. 교육 장소는 상황에 따라서 주민 센터나 근거리 소재 학교 등의 전산 시설을 방문하여 활용한다.

- 경제 교육 (총 2시간): 생의 후반기 재무관리 등 경제 교육은 매 학기 1회, 1회 2시간 정도 실시한다.

- 건강 교육 (총 8시간): 신체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교양강좌를 매 학기 6-8회, 1회 1-2시간 정도 실시한다[기본적으로 한 강좌를 1시간 정도로 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2시간 분량의 강좌도 가능함].

- 인간관계 교육 (총 6시간): 가족, 또래, 젊은 세대, 이성 등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강의를 매 학기 4-6회, 1회 1-2시간 정도 실시한다[기본적으로 한 강좌를 1시간 정도로 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2시간 분량의 강좌도 가능함].

- 노래 교실 (총 15시간): 흘러간 노래(familiar songs)나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노래 (new songs, K-Pop), 창(traditional song) 등 노래를 즐기거나 배우는 시간을 매주 1회, 1회 1시간씩 가진다.

- 악기 교실 (총 15시간): 다양한 악기(musical instrument)를 다루는 시간을 매주 1회, 1회 1시간씩 가진다. 악기 연주를 응용하는 기회는 수요일을 이용하도록 한다.

- Dance 교실 (총 15시간): 수많은 동작을 기억해야 하고, 몸을 움직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조율을 요하는 고전 무용이나 현대 무용 중 하나를 선정하여 매주 1회, 1회 1시간씩 배운다. 수요일을 이용하여 연습을 하도록 한다.

- 토론 및 발표 (총 30시간): 자신의 가족이나 삶 또는 가치관 (자기 자랑이나 친인척 자랑도 포함함), 영화나 고전에 대한 소감, 건강관리 또는 질병 회복에 관한 경험담 등을 25분 정도 발표하고 나서 참여자와 토론 등을 하는 기회를 매주 2회, 1회 1시간씩 실시한다.

- 일반상식 (총 30시간): 역사나 문화, 예술, 과학, 언어 영역 등을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

quiz나 puzzle 형식으로 풀면서 지적 능력을 향상, 유지시키는 시간을 매주 2회, 1회 1시간씩 실시한다. Quiz나 puzzle 형식의 수업자료는 EBS나 KBS 등 공영방송의 협조를 통해서 구하지만, 교육대상자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영화감상 (총 8시간): 한국영화 위주의 고전영화 감상을 매월 1회 (매 학기 4회), 1회 2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영화의 선택 및 상영 시간은 EBS와 연계한다.

- 생활 언어 (총 30시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흥미 위주의 생활 외국어 초급과정 교육을 비롯하여 국어나 한문 등 매주 2회, 1회 시간씩 실시한다. 수업 자료는 EBS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 기타 필요한 분야 (총 33시간): 앞에서 언급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약간 늘리거나 다른 프로그램(예: 동년배를 상대하는 상담 기술의 습득과 실천 등)을 소개한다.

한 학기 동안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육프로그램은 주당 4시간, 15주이므로 모두 60시간이다. 그 60시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회의 (총 15시간): 매주 수요일 첫 시간은 주간활동을 점검하고 계획하는 회의를 한다.

- 위문봉사 (총 12시간): 소외계층 입소시설(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병원 등 시설) 위문봉사를 매 학기 4차례(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실시한다. 1회당 소요시간은 왕복교통을 포함하여 3-4시간이 소요된다.

- 동아리 활동 (총 33시간): 위문봉사가 없는 수요일 오후에는 동아리 활동(예: 바둑이나 장기 등의 board game; 당구, 탁구, 게이트볼 등 스포츠; 댄스나 합창, 악기 연주 등의 음악; 서예 등)을 통하여 취미생활 또는 학예발표회 등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한다. 매 학기 11회, 1회 3시간 정도 실시한다.

교육과정 대상자의 역할

모든 교육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는 교육 대상자 중에서 선발한다. 예를 들면, 생의

윤가현

후반기 재무관리에 관한 교육이 가능한 지도자는 교수나 세무사 출신 중에서, 또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이 가능한 지도자는 교수나 의사, 간호사를 비롯하여 각종 건강관리 전문가 등이 재능기부 차원의 특강을 하도록 한다. 또 악기나 음악 관련 지도자도 해당 분야 전문가 출신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토론 분야는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만약 해당지역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가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 특정 분야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도 능력에 따라서 두 부류 이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수혜자 역할을 하는 대상자의 요구 수준이 높았을 때 상대할 수 있는 지도자와 보통의 수혜자를 상대할 수 있는 지도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정규 교과목 수업 이외의 프로그램

정규 교과목 수업 이외에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운영한다.

1) **건강검진 및 체력검정**. 매년 2회(7월 초순, 익년 1월 초순)의 건강검진 및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에 따르면, 성인들의 검진주기는 2년 1회가 일반적이다(보건복지부, 2013a). 그렇지만 검진주기를 1년 1회나 2회 정도 실시하면서, 교육생들의 정기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역사회보건소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독감예방접종 등은 건강검진 시기와 무관하게 보건소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체력검정은 대상자의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매 학기 측정하여 feedback을 전달하면서 스스로 건강관리의 효과를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수학여행**. 매년 2회(6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1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의 수학여행을 실시한다. 2회의 수학여행 중에서 1회는 자체적으로 무박 1일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다른 1회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타 시도 또는 시군의 학교와 교류활동(예,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

해당 학교와 합동 수학여행)위주로 실시한다.

3) *학예발표회*. 매년 2회(6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및 1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한 한기동안 익히고 준비한 기량을 가족이나 일반인들에게 선보이는 학예발표회를 실시한다. 여름에 실시하는 학예발표회는 해당 학교의 행사로만 진행하고, 겨울에 실시하는 학예발표회는 지역사회 몇 개 학교들 또는 다른 지역의 학교들과 교류하는 등 규모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실시하면서 실력을 겨루기도 하지만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4) *자원봉사발표회*. 매년 2회 학예발표회 행사가 실시되는 날 그 행사의 일부로 진행한다. 행사의 일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두드러진 사례를 소개하고 표창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적극적인 노인의 상(image)을 제시하고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10월에도 제 6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한 바 있다. 또 2027년까지 노인자원봉사 참여율을 매년 1%씩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보건복지부, 2013d). 이는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은 교육생 모두에게 연간 5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필수사항이다. 봉사활동에 할애한 시간을 주별, 월별, 연간 등으로 기록하여 모든 교육생이 자신이 완수한 의무 사항의 누적시간을 주기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자원봉사활동의 분야는 최소한 다음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며, 분야나 영역에 대한 선택 비중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1) *신체 활동 봉사 영역*. 일손이 부족한 봄과 가을 시기에 농촌 지역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면서 교류하는 농촌 일손 돕기 또는 도시지역에서는 거리질서 캠페인이나 거리 환경의 미화 등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환경을 가꾸는 일 등이 그 예가 된다.

2) *정서 활동 봉사 영역*.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복지 시설기관 또

는 말기 환자들이 입원중인 병원 등을 방문하여 어려운 삶을 체험하는 위문 활동이 그 예가 된다.

3) *미래 세대를 위한 봉사 영역*.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취학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돌봄의 역할(예, 보육시설에서 동화 읽어주기 등)을 비롯하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학교교육(언어, 수리, 과학 분야 등)을 보충해주는 개인지도교사(tutor) 역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아울러 인성 지도 등의 스승(mentor) 역할의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등교를 하고, 방과 후 귀가할 때에도 위험이나 폭력(예, 집단 따돌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도 봉사활동에 속한다.

4) *장년층 및 동년배를 위한 상담 봉사 영역*. 퇴직을 준비하는 장년 세대들에게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 그 중에서도 재무관리(예, 창업의 위험과 안전성, 금융사기 예방 등), 건강관리 등에 관한 은퇴 이전에 퇴직 후 생활계획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을 해준다. 아울러 퇴직을 준비하는 세대나 이미 퇴직했어도 생의 후반기에 적절한 일을 하고 싶은 자들을 위한 직업 상담(vocational counseling)을 해주는데,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센터들과 연계하여 시간제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보건복지부, 2013b).

노노(老老)케어 서비스 등을 비롯하여 동년배를 위한 상담(peer counseling)으로는 질병이나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동년배들을 찾아 자살 등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적응(communitiy outreach)을 도와주는 것을 들 수 있다(김은주·윤가현, 2010; 보건복지부, 2013b). 배우자 사망(bereavement support) 등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공감 등의 정서적인 지지자가 되는 훈련과 함께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 자녀 세대와의 관계, 부부관계 및 그 외의 다른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어려움을 비롯하여 노년세대의 이성교제, 노혼, 황혼이혼의 예방 등도 상담한다. 아울러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훈련(예, 서로 상담자나 내담자가 되어 보면서 진행하는 모의 상담)도 실시한다.

기대효과 및 결론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지난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나중에 위원회의 소속 변경이 있었지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2차 기본계획의 시행 단계에 해당된다(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기본계획의 요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하여 사회의 각 분야별 사전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과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나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전반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나 사회 참여 기회 제공,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등이 있다. 우선 재정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들에게 정부는 이미 2004년부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를 사업을 시작하였다. 노인일자리는 국가기관(예,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과 연계하여 취업 관련 교육이나 훈련 및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효과가 있다. 지난 2004년도에는 2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248,395개의 일자리가 제공되었다(보건복지부, 2013d).

여러 가지 이유로 전일제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본고에서 제안하는 의무교육제도의 대상자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다른 고령자들은 의무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즐길 수 있다. 즉 교육과정의 참여 자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사회참여가 가능하고, 안정된 삶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아울러 수명연장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등 WHO(2002)에서 정리한 활기찬 노후의 개념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다(선우덕 등, 2012).

특히 교육과정의 일부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다양하다.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효과를 비롯하여 사회적 교류 확대, 소속감이나 친교의 욕구 충족, 생활만족도의 증가, 상실된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의 보충,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긍정적 자기상 유지, 지역사회와 관계를 통한 고령자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정립 등이다(김수영 등, 2009). 또 어린 시절부터 소외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후세들에게 주변 환경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결혼 가정이나 조손 가정 출신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미래사회가 밝아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고령자의 의무, 책임 및 역할의 차원에서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나 청소년 세대들에게 인간의 본질(존중의식, 공존의식, 조상들의 지혜로운 삶 등)을 습득, 전수시켜주는 효과를 의미하는데, 이를 토대로 고령자를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복원될 수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20세기 후반에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성인교육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주로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교육을 통해 고령자가 취업하고,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곧 성인교육의 주된 목적은 고령근로자의 기술 퇴보를 방지하여 노동시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선우덕 등, 2012). 우리나라 교육부(2013)의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국민의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에 해당되는 평생학습 참여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유럽의 성인교육에 관한 사업계획보다 더 포괄적인 느낌이 들지만, 이와 동시에 더 피상적인 느낌도 든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의무교육제도는 유럽 국가들의 사업계획이나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

우리나라의 현재 사업계획들보다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미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의 필요성이나 기능을 설명할 때 언급했듯이 고령사회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는 건강과 관련된 국가나 가계 재정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비롯하여 독거노인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감소되는 효과, 특히 고령자들의 소외감을 감소시키면서 자살률을 낮추는 효과, 심신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 세대 간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활발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 고령자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 정보 기술 발달로 인한 적응능력 저하를 감소시켜주는 효과, 젊은 시절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한이 깊었던 고령자들에게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효과, 젊은 시절처럼 활동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효과, 10대나 20대처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심신을 젊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효과, 자신의 지적능력을 노후에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효과 등 너무나도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는 고령 사회 및 초고령 사회에서도 성공적 노화,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나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정부예산으로 제도 운용의 틀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본고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학문적인 차원에서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본고가 고령자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 즉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초안에 해당됨을 명시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1).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2012-2016).
(2011. 12.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령사회인력정책팀).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년 국가 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 발표.
(2012. 12. 05. 보도자료).
- 교육부 (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13-2017). (2013. 09. 13.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2013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2013. 09. 13. 보도자료).
- 김명정 (2012).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시민교육 목표와 내용의 변천: 고등학교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4 (2), 1-29.
- 김수영 · 모선희 · 원영희 · 최희경 (2009). *노년사회학*. 서울: 학지사.
- 김은주 · 윤가현 (2010).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동료상담의 효과. *한국노년학연구*, 19, 115-131.
- 대한민국 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 박상철 (2010). *노화혁명: 고령화충격의 해법*. 서울: 하서출판사.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발간등록번호 11-1351000-000081-10). (2009. 09. 발행)
- 보건복지부 (2013a). 2013년 건강검진사업 안내. (2013. 01. 발표자료)
- 보건복지부 (2013b).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2013. 05. 01. 발표자료)
- 보건복지부 (2013c).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025-10). (2013. 07. 29. 수정)
- 보건복지부 (2013d). 2012 보건복지백서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0160-10). (2013. 09. 발행)
- 선우덕 · 김세진 · 모선희 (2012).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 활기찬 노후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2-47-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희권 (2001).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순차적 실시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교육문제연구*, 14, 77-92.
- 정경희 · 정은지 · 남현주 · 최혜지 (2012).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연구보고서 2012-47-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순돌 · 어운경 (2012). WHO의 고령친화도시모델가이드 충족도 분석: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2, 913-926.
- 통계청 (2013). *2013 고령자 통계*. (2013. 09. 30. 발표).
- Anzai, Y., Ohkubo, T., Nishino, Y., Tsuji, I., & Hisamichi, S. (2000).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actices and education level in the rural Japanese population. *Journal of Epidemiology*, 10 (3), 149-156.
- Borg, C., Hallberg, I., & Blomqvist, K. (2006).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people (65+) with reduced self-care capacity: The relationship to social, health and financial aspect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5, 607-618.
- Brännlund, A., Nordlander, E., & Strandh, M. (2012). Higher education and self-governance: The effects of higher education and field of study on voice and agency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31, 817-834.
- Broek, S., & Hake, B. (2012). Increasing participation of adults in higher education: Factors for successful poli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31, 397-417.
- Charness, N., Kelley, C., Bosman, E., & Mottram, M. (2001). Word-processing training and retraining: Effects of adult age, experience, and interface. *Psychology and Aging*, 16, 110-127.
- Cowell, A.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health behavior: Some empirical evidence. *Health Economics*, 15 (2),

125-146.

- Dickenson, A., & Gregor, P. (2006). Computer use has no demonstrated impact on the well-being of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64, 744-753.
- Engbersen, G., van der Leun, J., & de Boom, J. (2007). The fragmentation of migration and crime in the Netherlands. *Crime and Justice*, 35, 389-452.
- Formosa, M. (2012a). Education and older adults at 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Educational Gerontology*, 38, 114-126.
- Formosa, M. (2012b). Lifelong education for older adults in Malta: Current trends and future visions.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58, 271-292.
- Gabriel, Z., & Bowling, A. (2004). Quality of life from the perspectives of older people. *Ageing & Society*, 24, 675-691.
- Gamble, A., & Garling, T.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life satisfaction, happiness, and current mood.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 31-45.
- Gilbert, D., Lee-Kelley, L., & Barton, M. (2003). Technophobia, gender influences and consumer decision-making for technology-related products. *European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6 (4), 253-263.
- Hummert, M., Garstka, T., Ryan, E., & Bonnesen, L. (2004). The role of age stereotype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J. Nussbaum & J. Coupland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aging research* (2nd ed., pp. 91-121).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OECD (2012). *Education at a Glance 2012: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doi: [10.1787/eag-2012-en](https://doi.org/10.1787/eag-2012-en).
- OECD (2013). *OECD Factbook 2013: Economics,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doi: [10.1787/factbook-2013-en](https://doi.org/10.1787/factbook-2013-en).

- Regidor, E., Barrio, G., de la Fuente, L., Domingo, A., Rodriguez, C., & Alonso, J. (1999). Association between educational level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Spanish adult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2 (2), 75-82.
- Schoklitsch, A., & Baumann, U. (2011). Measuring generativity in older adults: The development of new scales. *Journal of Gerontology and Geriatric Psychiatry*, 24, 31-43.
- Tam, M. (2012). Lifelong learning for elders in Hong Kong: Policy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31, 157-170.
- WHO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WHO/NMH/NPH/02.8).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Williams, A., & Nussbaum, J. (2001).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across the lifespan*. Mahwah, New Jersey: Erlbaum.
- Youn, G., & Song, D. (1992). Aging Koreans' perceived conflicts in relationships with their offsprings as a function of age, gender, cohabitation status, and marital statu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2, 299-305.
- Zepke, N. (2013). Lifelong education for subjective well-being: How do engagement and active citizenship contribute?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32, 639-651.

**Post-Tertiary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n Korea
as a Coping Plan with the Aged or Super-Aged Society**

Gahyun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500-757

There are so many social problems faced by an aging society. Most countries try to seek a variety of solutions for th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initiated several solving projects in order to boost social participation, employment,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older adults, but the problems might be much more severe in aged society or super-aged society. Thus, the post-tertiary compulsory education system for the older adults was suggested as a plan or strategy which could prevent or reduce the possibilities of occurrence for the problems in this article. The system would have a number of functions of mental and physical health management,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social participation, self-actualization and so on for the older adults, resulting in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through active aging as well as successful aging. How the system would be managed, what components should be included in the curriculum, and what effects would be expected from implementing the system were also stated in this article.

(논문접수일: 2013년 10월 8일)

(수정논문접수일: 2013년 11월 14일)

(논문게재승인일: 2013년 11월 25일)